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9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신영대·박희승·김정호

민형배 • 한병도 • 민병덕

임오경 • 한민수 • 전재수

윤준병 • 서삼석 • 정청래

정준호 · 문금주 의위

(14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 미달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산업체 등과 연계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입학지원자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3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세제 지원) 정부는 지역 발전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조의4(세제 지원) 정부는 지역
	발전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
	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과 계
	약학과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
	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u>있다.</u>